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737
----------	-------

발의연월일 : 2023. 9. 26.

발 의 자 : 최혜영 · 김민석 · 윤준병
정성호 · 박홍근 · 윤관석
김홍걸 · 남인순 · 박주민
인재근 · 윤미향 · 김용민
이은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 장애인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운영비용과 시설 설치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제도의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22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9301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을 “제1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설치 방법 및 절차, 제3항”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제1항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친화 산부인과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9301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3(장애친화 산부인과 운 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 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기준, 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 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9301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3(장애친화 산부인과 운 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 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 의료원에 제1항에 따른 시설· 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설치하여 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 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설치 방법 및 절차, 제3항----- ----- ----- -----.
제22조(비용 지원) ① 국가와 지	제22조(비용 지원) ① -----

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8. (생략) <u><신설></u> ② (생략)	----- ----- ----- ----- ----- --. 1. ~ 8. (현행과 같음) 9. <u>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의</u> <u>료기관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u> <u>행을 위한 시설·인력·장비</u> <u>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u> <u>비용</u> ② (현행과 같음)
---	---